

# 일본의 상품권에 관한 법제도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I. 상품권 관련 규제의 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로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상품권, Gift권, 쿠폰권, 선불카드 등에 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행 등에 관해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sup>1)</sup>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는 「선불식증표(証票)의 규

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았다. 「선불식증표(証票)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상품권, Gift권, 선불카드 등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등의 발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이, IC형태의 상품권 등에 더해 서버형(型)의 상품권 등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자가형발행자의 신고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규제의 변화를 가져왔다.<sup>2)</sup>

또한 일본자금결제업협회와 같은 자주규제



- 1)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이, IC형태의 상품권 등에 더해 서버형의 상품권 등을 포함하여 “선불식지불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선불식지불수단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선불식증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 Gift권, IC식 선불카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과 수량이 기록된 증표와 카드로서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고, 상품의 구입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것을 제시, 교부,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금액과 수량의 기록이 없고 이용자를 특정하는 ID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 또는 이용자에게 ID만이 교부·통지되는 것으로, ID에 의해서 단말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행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에 기록된 이용자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품의 구입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으로 서버형 선불식지불수단이 이에 해당한다.
- 2)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외에도 정부명령·내각부명령,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금융청장관의 고시 및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사무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을 통한 자주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 II. 자금결제의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에 따른 분류

### 1.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권 등

제3조에서는 당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 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증표, 전자기기, 그 외 물건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기록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대가를 얻어서 발행되는 증표 또는 번호, 기호, 그 외 부호로 그 발행하는 자 또는 당해 발행하는 자가 지정한 자료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이들의 대가의 변제를 위해서 제시, 교부, 통지, 그 외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 (2) 증표 등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기록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에 대응하는 대가를 얻어서 발행되는 증표 또는 번호, 기호, 그 외 부호로 발행자 등에 대해서 제시, 교부, 통지, 그 외 방법



- 3) 선불식지불수단(상품권 등) 발행자와 자금이동업자가 설립한 일반사단법인으로 법령준수를 위한 회원지도 및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처리업무 등을 하고 있다.
- 4) “자가형상품권 등”이란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자(당해 발행하는 자와 정부명령에서 정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의 구입 혹은 입대를 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대가의 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 또는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물품의 급부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

에 의해서 당해 물품의 급부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

### 2. 적용이 제외되는 상품권 등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권 등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1) 승차권, 입장권, 그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부명령으로 정한 것
- (2) 발행일로부터 정부명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
-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상품권 등
- (4) 법률에 의해서 직접 설립된 법인, 특별법률에 따라 특별설립행위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률에 의해서 지방공공단체가 설립자가 되어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전부가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자에 의한 것, 그 외 국가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부명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상품권 등
- (5) 전적으로 발행하는 자의 종업원에 대해서 발행되는 자가형상품권 등(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sup>4)</sup>과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정부명령에서 정한 상품권 등

### Ⅲ. 상품권 등의 발행자에 따른 분류

#### 1. 자가형발행자(自家型發行者)

상품권 등의 발행을 위해서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준일말사용잔고(基準日未使用殘高 / 발행총액-총회수액)<sup>5)</sup>가 1천만 엔을 넘는 경우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표시의무(제13조), 장부작성보존의무(제22조), 보고서제출의무(기준기간에 발행한 상품권 등의 발행액, 기준일말사용잔고, 발행보증액 등을 기재한다. 제23조), 보고징수명령(상품권 등의 발행자의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품권 등의 발행자에 대해서 업무 혹은 재산에 관해서 참고가 되는 보고서 혹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입회검사(상품권 등의 발행자의 영업소, 사무소, 그 외 시설에 입회해서 업무 혹은 재산상황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개선명령(상품권 등의 발행업무에 관해서 상품권 등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품권 등의 발행자에 대해서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자가형발행자에게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혹은 명령 또는 이들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6조).

#### 2. 제3자형발행자(第三者型發行者)

상품권 등의 발행을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표시의무·장부작성보존의무·보고서제출의무·보고징수명령·입회검사·업무개선명령에 관한 규제는 자가형발행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제3자형발행자가 ①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③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혹은 명령 또는 이들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 등의 발행자의 영업소 혹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7조).

### Ⅳ.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

#### 1. 자가형발행자의 사후신고

자사의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5) 기준일은 매년 3월말 또는 9월말이다.

등(자가형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법인(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 또는 개인은 기준일(매년 3월말 또는 9월말)에 기준일말사용잔고의 1천만 엔을 넘는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해 신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서류, 그 외 내각부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기준일의 기준일말사용잔고는 제외) 지체 없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제5조).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자가형발행자명부를 작성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제6조).

- ① 성명,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②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액
- ③ 상품권 등의 발행업무에 관련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④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 ⑤ 당해 기준일의 기준일말사용잔고
- ⑥ 상품권 등의 종류, 명칭 및 지불가능금액 등
- ⑦ 물품의 구입 혹은 임대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이들 대가의 변제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물품의 급부 혹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또는 기한
- ⑧ 상품권 등의 발행업무의 내용 및 방법
- ⑨ 상품권 등의 발행 및 이용에 관한 이용자로부터의 불만 혹은 상담에 대응할 영업

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⑩ 그 외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

## 2. 제3자형발행자의 등록

### (1) 발행자격의 제한

자사 이외의 제3자의 점포(가맹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제3자형상품권 등)의 발행은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한 법인만이 할 수 있다(제7조). 또한 제3자형발행자는 명의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2조).

### (2) 등록신청서 관련사항

자가형발행자의 신고사항(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이 아닌, 임원의 성명이 기재사항인 것만 다르다)과 동일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등록거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재무에 관련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제8조). 또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변경에 대한 신고(제11조)와 발행자명부에 관한 사항(제9조)은 자가형발행자의 경우와 동일하다(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자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 (3) 등록거부사항

제10조에서는 등록신청자가 ① 법인이 아니거나, ② 상품권 등으로 구입 혹은 임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위험할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지 않은 법인, ③ 가맹점에 대한 지분을 적절히 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 법인, ④ 다른 제3자형발행자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상호를 이용하거나, 다른 제3자형발행자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상호를 이용하려는 법인, ⑤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⑥ 법인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⑦ 법인의 임원 중 성년피후견인,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자(복권되지 않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종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등록신청서 혹은 그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를 빠뜨리고 있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표시 및 정보공개의무

제13조에서는 상품권 등의 발행자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등에 ① 이름, 상호 또는 명칭, ② 상품권 등의 지급가능금액 등, ③ 사용기간 또는 기한, ④ 이용자의 불만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⑤ 그 외 내각부령에서 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발행보증금 공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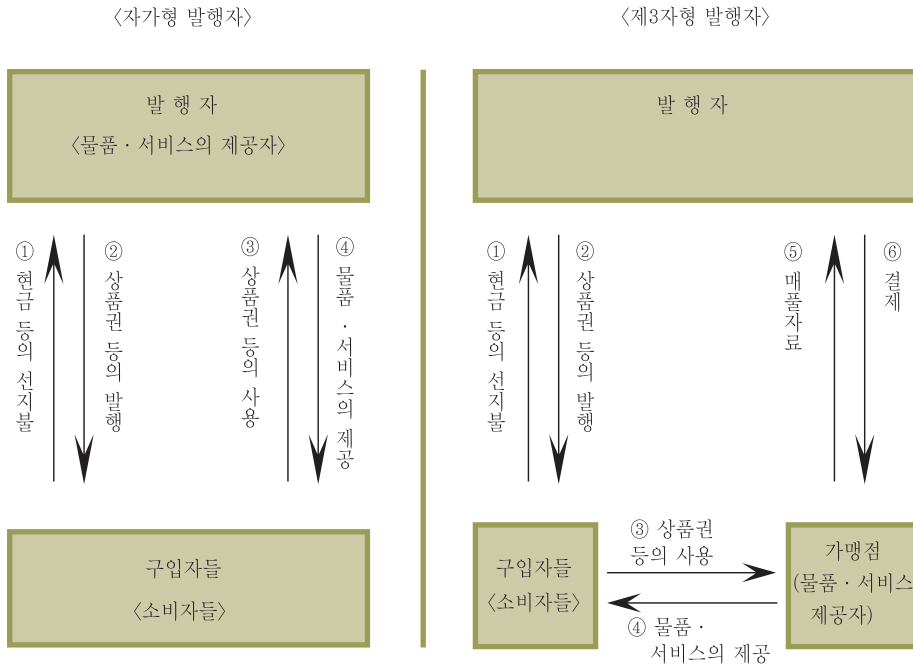
발행보증금은 발행자가 상품권 등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고, 상품권 등의 소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만일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상품권 등의 소유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보증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권 등의 발행자는 기준일말사용잔고가 정부명령에서 정한 금액(1천만 엔)을 넘는 때에는 당해 기준일말사용잔고의 50%의 금액 이상을 발행보증금으로서 주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제14조). 다만, 은행과 발행보증금보전계약 또는 신탁회사와의 발행보증금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을 수 있다(제15·16조). 그러나 상품권 등의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전금액 또는 신탁재산을 환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탁을 명령할 수 있다(제17조).

### 5. 상품권 등의 환불

원칙적으로 상품권 등의 환불은 되지 않으며, 폐업 등으로 인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액면금액의 일부가 환불이 가능하다.

<표-1> 자가형발행자와 제3자형발행자의 차이



김 경 석

(일본주재 외국법제조사원)